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7. 4. 9.

북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 3. 29.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7. 3. 29.

다. 상정일자 : 제127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07.4.9)
상정, 심사, 수정가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황동연 청소행정과장)

가. 제안이유

-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후 제3자의 재활용 등으로 인한 환불 요구 민원해결 및 대형폐기물 접수·처리대장 수기작성을 전자결재시스템 대형폐기물일일보고로 대체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규정 신설(안 제29조의2)
 -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한 후 환불사유가 발생할 경우 동장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환불요구를 받은 동장은 수집·운반여부를 조사하여 3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환불요구 사항을 보고하고, 구청장은 보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환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대형폐기물 접수·처리대장 규정 삭제(안 제33조)
 - 대형폐기물 접수·처리대장 수기 작성을 전자결재시스템 대형폐기물 일일보고로 대체

다. 개정근거

- 폐기물관리법(2007.1.19 법률제8260호) 제13조

3. 검토보고의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 동 조례안은 제10조제2항제4호 규정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한 후 환불사유가 발생할 경우 동장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대형폐기물 접수·처리대장 수기작성을 전자결재시스템 대형폐기물 일일보고로 대체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조례안 중 안 제29조의2(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환불)에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한 후 환불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동장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환불요구를 받은 동장이 수집·운반 여부를 조사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환불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를 받은 동장이 수집·운반여부를 조사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별지 제14호 서식 중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취소(변경) 신고”는 조례 제33조제2항 관련 [별지 제10호 서식] 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에 대한 취소(변경) 신고사항이므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로 하고, 주소 란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07.4.5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번 주소 표기를 삭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지 제15호 서식] 중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취소(변경)신고 접수·처리 대장”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 신고 접수·처리대장”으로,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을 각각 신설한다.”는 “별지 제14호 서식 및 별지 제15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07. 4. 9.

제안자 : 복지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동 조례안 일부조항중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가. 안 제29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10조제2항제4호 규정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한 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동장에게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안 제29조의2제2항중 “대하여 환불요구를” 을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취소(변경)신고를” 로 함.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9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10조제2항제4호 규정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한 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동장에게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안 제29조의2제2항중 “대하여 환불요구를” 을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를” 로 한다.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을 각각 신설한다.” 를 “별지 제14호 서식 및 별지 제15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로 한다.

별지 제1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 서식의 제목 중 “배출수수료” 를 “배출신고” 로 한다.

[별지 제14호 서식]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 신고 취소(변경)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					처리 기간	
					9일 (신고일로부터)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 호			전 화 번 호	자 택 : 핸드폰 :		
주 소						
취소(변경) 내 역	폐기물명	규격	수량	기납부금액	환불신청액	변경내역
	합 계					
취소(변경)사유						
신고인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서울시 마포구 폐기물관리조례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변경)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마 포 구 청 장 귀 하						

수 정 안 조 문 대 비 표

원	수 정 안
제29조의2(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환불) ① 제10조제2항제4호 규정에 따라 <u>대형폐기물 배출신고</u>를 한 후 환불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동장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 환불요구를 받은 동장은 수집·운반 여부를 조사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에 등재하고 3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환불요구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보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환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을 각각 신설한다.	제29조의2(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환불) ① -----<u>대형폐기물 배출신고</u>를 한 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동장에게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를 ----- ----- ----- 별지 제14호 <u>서식</u> 및 별지 제15호 서식을 각각 <u>별지와 같이</u> 신설한다.

원 안						수 정 안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취소(변경) 신고 취소(변경)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									처리 기간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 신고 취소(변경)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									처리 기간		
									9일 (신고일로부터)												9일 (신고일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 호				전 화 번 호		자택 : 핸드폰 :				상 호				전 화 번 호		자택 : 핸드폰 :							
주 소		서울시 마포구 동부천동 아파트 번지 호										주 소											
취소내역		폐기물명		규격	수량	기납부금액		환불신청액		취소내역		폐기물명		규격	수량	기납부금액		환불신청액		변경내역			
합 계										합 계													
취소사유												취소(변경)사유											
신청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신고인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서울시 마포구 폐기물관리조례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변경)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마 포 구 청 장 귀 하												서울시 마포구 폐기물관리조례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변경)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마 포 구 청 장 귀 하											

수 정 안

[별지 제15호 서식]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 신고 접수·처리대장[illegible]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7. 3.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후 제3자의 재활용 등으로 인한 환불 요구 민원 해결 및 대형폐기물 접수·처리대장 수기작성을 전자결재시스템 대형폐기물 일일보고로 대체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규정 신설(안 제29조의2)

-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한 후 환불사유가 발생할 경우 동장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환불요구를 받은 동장은 수집·운반여부를 조사하여 3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환불요구 사항을 보고하고, 구청장은 보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환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나. 대형폐기물 접수·처리대장 규정 삭제(안 제33조)

- 대형폐기물 접수·처리대장 수기 작성을 전자결재시스템 대형폐기물 일일보고로 대체

3. 개정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생활폐기물의 처리등)

4. 조 례 안 : 따로 붙임

5.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07. 3. 8. ~ 2007. 3. 28 (특이사항 없음)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7. 3. 29)

다. 신·구 조문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로,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3호 및 동조제4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한다.

제7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10조제5항중 “행정대집행법”을 “「행정대집행법」”으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환불) ①제10조제2항제4호 규정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한 후 환불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동장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 환불요구를 받은 동장은 수집·운반 여부를 조사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에 등재하고 3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환불요구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보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환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3조제2항중 “ 마포구 지정전산망을 활용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하며, 동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대형폐기물 접수처리대장을 비치·관리한다”를 “ 마포구 지정 전산망을 활용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0조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을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	제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폐기물관리법</u> (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u>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u> (이하 “시조례”라 한다) 및 <u>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u> (이하 “시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폐기물관리법」 - - - -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 - - - - 「서 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 - - - - - - - - - - - - - - - -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의2. (생략) 3.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u>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u>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u>대기환경보전법</u> · <u>수질환경보전법</u> 또는 <u>소음·진동규제법</u> 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중 <u>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u>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u>대기환경보전법</u> · <u>수질환경보전법</u> 또는 <u>소음·진동규제법</u> 의 규정에 의한 배출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2의2. (현행과 같음) 3. - - - - - 「산업집적활성 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 - - - - - - - - 「 <u>대기환경보전법</u> 」· 「 <u>수질환경보전법</u> 」 또는 「 <u>소음·진동규제법</u> 」 - 4. - - - - - - -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 - - - 「 <u>대기환경보전법</u> 」·「 <u>수질환경보전법</u> 」 또는 「 <u>소음·진동규제법</u> 」 - - - - -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5. ~ 8. (생략) 제7조(폐기물의 광역관리 등) ① ~ ② (생략) ③ 구와 다른 자치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광역처리규약을 정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배출방법 및 청결명령) ① ~ ④ (생략) ⑤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당해 생활폐기물배출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생략) <신 설>	----- ----- ----- 5. ~ 8. (현행과 같음) 제7조(폐기물의 광역관리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지방자치법」 ----- ----- ----- ----- 제10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배출방법 및 청결명령)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행정대집행법」 ----- ----- ----- ----- ----- ⑥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환불) ① 제10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한 후 환불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동장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 ①(생략) ② 제2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에 구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신고하거나, <u>마포구 지정 전산망을 활용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하며, 동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대형폐기물 접수처리대장을 비치·관리한다.</u> 제35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u>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u>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생략) ② (생략) 제40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u>비송사건절차법</u>의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과태료는 국고에 귀속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 환불요구를 받은 동장은 수집·운반 여부를 조사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에 등재하고 3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환불요구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보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환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3조(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 ①(현행과 같음) ② ----- ----- ----- -----, <u>마포구 지정 전산망을 활용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한다.</u> 제35조(수수료의 감면)① ----- ----- -----. 1.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 ----- ----- 2.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과태료의 귀속) ----- ----- 「<u>비송사건절차법</u>」 의 ----- -----

[별지 제14호 서식]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취소(변경) 신고					처리 기간
취소(변경)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
					9일 (신고일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부동 호 아파트 동 호				
취소내역	폐기물명	규격	수량	기납부금액	환불신청액
	합계				
취소사유					
신청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서울시 마포구 폐기물관리조례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변경)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마 포 구 청 장 귀 하					

(별지 제15호 서식)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취소(변경) 신고 접수·처리대장

[illegible]